

파주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현재 시행중인 파주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이 '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1)

-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한 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 82개 항목, 개정 8개 항목, 삭제 3개 항목을 개정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 12개 항목, 개정 16개 항목, 삭제 10개 항목을 개정함.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사항의 신설, 개정 또는 삭제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과태료 부과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이 환경부예규 제186호('99. 3. 24)에 의거 개정되어 동 규정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규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